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2002년 12월 23일 제정
2004년 2월 25일 개정
2007년 9월 12일 개정
2011년 2월 22일 개정
2016년 2월 16일 개정
2017년 11월 20일 개정
2022년 2월 24일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상공회의소(이하 “본 회의소”라 한다) 정관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의 선거(이하 “선거”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2. 22)

제2조(적용범위) 본 회의소의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상공회의소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본 회의소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선거인의 정의) 이 규정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의원 또는 특별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의원 또는 특별의원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를 말한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설치) ①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본 회의소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정관 제36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선거사무를 국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07. 9. 12)

②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선거일공고일부터 선거사무가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 2. 22)

③위원회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회”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④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 ①회장은 선거일 공고와 동시에 상공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의원 또는 특별의원 후보자, 선거권이 있는 자와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및 본 회의소 임직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07. 9. 12)

③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본 회의소는 위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의원 및 특별의원 후보자의 등록
3.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4. 투표의 유효·무효 및 이의에 대한 판정
5.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6. 당선인의 확정
7.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사무보조) 회장은 본 회의소 사무국 임·직원 중에서 지정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선거비용) 위원회의 운영 기타 선거와 관련한 비용은 본 회의소에서 부담한다.

제3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9조(선거권) ①회원은 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이 가지는 선거권의 수는 별표에 따라 회비납부금액 선거권 수와 추가회비 및 특별회비금액에 해당하는 선거권 수를 별도 산출하여 합산한다. (개정 2007. 9. 12, 2017. 11. 20, 2022. 2 24)

②특별회원은 1개의 특별의원 선거권을 가진다.

제10조(피선거권) ①회원은 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특별회원은 특별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11조(선거권의 정지)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6개 기의 기간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 전일 오후 6시까지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9. 12)

제12조(피선거권의 제한) ①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 및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1. 선거권이 없는 자 (신설 2007. 9. 12)
2.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6. 2. 16)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07. 9. 12)
4.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개정 2007. 9. 12, 2011. 2. 22)
5.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이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원 및 특별회원이 선거일이 속하는 기의 직전 6개 기의 기간 동안 1회라도 회비의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선거권이 정지된다. 다만,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등록 개시일 전일 오후 6시까지 회비의 납입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9. 12)

제4장 선거구 및 투표구

제13조(선거구) 본 회의소의 의원 및 특별의원은 본 회의소의 관할구역
역을 단위로 하여 선거한다.

제14조(투표구) 투표구는 선거구로 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구(또는 시·군)에 투표구를 둘 수 있다.

제5장 선거일

제15조(선거일) ①임기만료에 의한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는 그 임기
만료일전 1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15일전에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②보궐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0
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15일전에 회장이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6장 선거인명부

제16조(명부작성) ①회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을 공고하
는 날(“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로 한다)부터 3일 이내 (이하 “선거인
명부작성기간”이라 한다)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곳 이상의 투표구를 두는 경우에는 투표구
별로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②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본 회의소의 회원 또는
특별회원으로서 법·시행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원 또는 특별

의원의 선거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③선거인명부에는 선거권자의 상호(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로 한다. 이하 같다) 및 선거권의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선거인명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가) 및 (나)에 의한다. 다만, 선거인명부의 작성은 전산조작에 의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명부는 회원과 특별회원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⑥회장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즉시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그 등본(선거인명부 작성 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 1통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제17조(명부열람) ①회장은 늦어도 선거일 12일전부터 5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 또는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선거인명부의 열람 또는 공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07. 9. 12)

③회장은 열람개시일 2일전까지 제1항의 장소와 기간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과 결정) ①선거권자는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자가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소명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회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회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불복신청과 결정) ①제18조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 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소명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회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뜻을 신청인과 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명부의 수정) ①회장은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을 비교란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회장은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이 지난 후 선거인명부 확정 전까지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 중 오기 또는 선거권이 없는 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수정 또는 삭제하되, 비교란에 그 사유와 연월일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수정 또는 삭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본 회의소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제21조(명부의 확정과 효력)①선거인명부는 선거인명부 열람마감2일후에 확정되며 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 9. 12)

②선거인명부는 확정 즉시 본회의소 홈페이지 등에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③선거인명부가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선거인명부 확정이후 선거인이 폐업, 해산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명부에서 삭제한다. (신설 2007. 9. 12)

④확정선거인명부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삭제내용은 즉시 본 회의소 홈페이지 등에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제7장 후 보 자

제22조(후보자등록) ①의원 및 특별의원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인명부 열람개시일부터 5일내에 위원

회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후보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2. 22)

②후보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으로 한다. 이하 같다) 사본(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으로 한다)
(개정 2007. 9. 12, 2011. 2. 22)

2.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3. 기타 필요한 서류

③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로 한다. (개정 2007. 9. 12)

제23조(등록무효) ①후보자등록 후에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②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사퇴)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①위원회는 후보자 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에 후보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다.

제8장 투 표

제26조(선거방법) 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방법에 의한다. 다만, 의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2)

제27조(투표소) ①위원회는 투표구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투표소에는 규정에 의한 기표소·투표함·위원의 좌석 기타 투표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선거일전일까지 설비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표소는 그 안을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하며, 투표함은 의원과 특별의원을 구분하여 설비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가)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한 투표소의 변경은 별지 제11호 서식의(나)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⑤투표소는 선거일 1일전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후보자의 일람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8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제작) 위원회는 별지 제13호 서식의(가) 및 (나)에 의한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투표함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29조(투표안내문의 발송) ①위원회는 후보자등록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에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투표안내문 및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위임장(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고, 반드시 투표안내문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을 선거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②선거인명부열람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까지 선거인 및 선거권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인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 및 위임장을 즉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안내문 및 위임장이 선거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도달한 투표안내문 및 위임장을 선거인이 분실·훼손 또는 오손하여 재교부가 필요할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재교부하되, 반드시 선거인 또는 선거인의 대리인(임·직원에 한함)이 방문 수령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받는 자가 선거인 본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포함한다. 이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을 총칭하여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대리인(임·직원에 한함)인 경

우에는 신분증명서와 함께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교부되는 위임장과 선거인명부에는 “재교부”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2021. 2. 18)

제30조(투표시간) 투표소는 선거일 오전 9시에 열고 오후 5시에 닫는다. 다만, 마감하는 때에는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투표를 하게 한 후에 닫아야 한다.

제31조(투표) ①선거인의 대표자는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위원 앞에서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의 수에 해당하는 수의 투표용지를 받아 직접 투표한다. (개정 2007. 9. 12)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인의 대표자가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거인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투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 9. 12)

③제2항의 대리투표자가 선거인의 임원일 경우에는 선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을 말한다)과 선거인의 임원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9. 12)

④제2항의 대리투표자가 선거인의 직원일 경우에는 선거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및 선거인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⑤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인감증명서, 위임장,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회수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⑥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 1매에 1인의 후보자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난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아니하게 접어 위원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⑦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훼손 또는 오손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⑧위원회는 투표개시 이후 법인인 선거인이 상호변경이나 대표자 변경 등의 사유로 선거인명부와 상이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징구하고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선거인의 경우에는 상호변경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원본을 제시받아 사본을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제31조의2(투표참관) ①투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4인의 범위 내에서 투표참관인을 둘 수 있다. (신설 2007. 9. 12)

②의원 또는 특별의원 후보자가 투표참관을 희망할 경우에는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투표참관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③투표참관 신청인이 4인을 초과할 때에는 투표선언 전에 위원장 입회하여 추첨을 통해 4인의 참관인을 결정한다. (신설 2007. 9. 12)

④투표참관은 2인씩 교대로 참관토록 하고 투표참관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⑤투표 참관인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임직원에 한하며, 1후보자가 복수로 참관신청할 수 없다. (신설 2007. 9. 12)

제32조(기표방법)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경우에는 기표소에 비치된 “○”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3조(투표관리)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위원을 지정하여 투표소에 참석하여 투표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함의 봉쇄 등) ①투표를 개시하는 때에는 참석한 위원이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뚜껑과 자물쇠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②투표시간이 종료되어 선거인의 투표가 끝나는 때에는 참석한 위원이 투표함의 투입구를 봉쇄·봉인하여야 한다.

제35조(투표록의 작성 등) ①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투표록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참석한 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 없이 투표함 및 그 열쇠와 투표록·잔여투표용지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9장 개 표

제36조(개표관리) ①개표사무는 위원회가 행한다.

②개표를 개시한 이후에는 개표소에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참석하여야 한다.

제37조(개표소) ①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별지 제18서식의(가)에 의하여 설치할 개표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즉시 별지제18호 서식의(나)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선거일전일까지 개표소에 투표함의 접수 및 개함(開函), 투표지의 점검 및 집계, 위원과 개표참관인의 좌석 기타 개표사무에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제38조(개표개시) 개표는 개표소에 투표함이 전부 도착되면 개시한다.

제39조(투표함의 개함) ①투표함을 개함하는 때에는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그 뜻을 선포하고 투표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투표함을 개함한 후 투표수를 계산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40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6. ○표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기표란 외에 ○표를 추가한 것
7. 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제41조(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2조(개표참관) ①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임·직원이 개표참관을 희망

할 경우 선거일 3일전까지 위원회에 서면으로 개표참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신청자에 한하여 개표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참관신청은 후보자나 후보자의 임·직원에 한하며 1후보자당 1인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7. 9. 12)

②위원회는 개표 참관 장소를 별도로 구획하여 참관하게 하여야 하며, 참관인은 구획장소를 벗어나 개표 장소에 접근하거나 개표를 방해,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9. 12)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개표 개시 전에 추첨을 통해 전체참관인 중 2인을 선발하고, 선발된 2인에 한해 구획장소를 벗어나 개표 장소에 접근하여 참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7. 9. 12)

④개표참관인은 위원회가 발행하는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 개표참관증을 패용하여 한다. (신설 2007. 9. 12)

⑤위원회는 참관신청을 하지 않은 자가 참관하거나, 개표참관증을 패용하지 않았을 때, 개표를 지연 또는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07. 9. 12)

제43조(선거록의 작성 등) ①위원회는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공표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하여 선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록에는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투표록 등의 보관) 위원회는 투표록·선거록 기타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회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장 당선인

제45조(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 순으로 의원 및 특별의원의 정원에 달하기까지 각각 당선인을 결정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득표수가 동일한 후보자가 2인 이상이 있는 경우

에는 그 대표자의 연장자(후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표자의 연령에 의한다)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하고, 연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추첨에 의하여 당선인을 결정한다.

③후보자의 수가 의원 및 특별의원의 정원과 같거나 이에 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④당선인 결정된 경우에는 위원회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하여 당선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46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경우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경우
2. 당선인이 제23조제1항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④제2항 및 제2항의 경우 위원회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당해 당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당선의 승계) 당선인이 임기개시일전까지 사퇴·사망하거나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다음 다수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제11장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48조(재선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4. 당선인이 모두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5. 당선인이 모두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의 효력이 상실하거나 당선
이 무효로 된 경우

제49조(보궐선거) 의원 또는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5분의 1미만의 결원이 있는 경우에도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7. 9. 12)

제12장 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한 특례

제50조(전자투표 및 개표의 정의 등) ①이 규정에서 “전자투표 및 개표”라 함은 전산조직에 의하여 투표·개표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②전자투표 및 개표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투표와 개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전자투표 및 개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그 취지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공고와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투표소 설치 등에 관한 특례) ①위원회는 전자투표를 위하여 화상에 의한 투표용지·기표방법·집계방법 기타 투표 및 개표의 전산처리방법이 장치된 전산조직(이하 “전자투표기”라 한다)을 투표소에 설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별도로 작성·제작하지 아니한다.

②전자투표기는 투표소마다 2이상 설비할 수 있다.

제52조(투표안내에 관한 특례) 위원회는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안내문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의한 투표절차 기타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3조(기표절차에 관한 특례) 위원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인의 대표자 또는 선거인의 임·직원임이 확인되어 선거인명부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자에게 선거인명부등록번호·선거권의

수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표를 교부하여 투표하게 할 수 있다.

제54조(투표방법에 관한 특례) 선거인이 기표하는 경우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투표기에 장치된 기표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55조(전자투표기의 봉쇄·봉인에 관한 특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전자투표기 및 개표기의 봉쇄·봉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투표함의 투입구”를 “전자투표기 안에 있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 및 전자투표기”로 한다.

제56조(전자투표기의 송부에 관한 특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투표가 끝난 후 지체없이 전자투표기와 투표집계저장디스켓 및 기록지보관함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7조(투표함 등 개함에 관한 특례) ①전산조작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기록지보관함을 개함하고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개봉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전자투표기 및 투표집계저장디스켓과 기록지보관함의 봉쇄와 봉인을 검사한 후 이를 열어야 한다.

②위원장은 전산조작에 의하여 투표집계저장디스켓에 저장된 투표수를 전산출력하여 투표록에 기재된 투표용지 교부수와 대조하여야 한다.

제58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제59조(투표집계 저장디스켓의 보관에 관한 특례) 위원회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회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8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작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제59조(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보관에 관한 특례) 위원회는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을 회장에게 인계하여 그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9. 12)

이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22)

이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16)

이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0)

이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4)

이 규정은 개정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신설 2007. 9. 12) (개정 2017. 11. 20, 2022. 2. 24)

회비납부 선거권 수

회비금액	선거권수	회비금액	선거권수
100만원 이하	1	2,800만원 이하	16
200만원 이하	2	3,100만원 이하	17
300만원 이하	3	3,400만원 이하	18
400만원 이하	4	3,700만원 이하	19
500만원 이하	5	4,000만원 이하	20
600만원 이하	6	4,500만원 이하	21
700만원 이하	7	5,000만원 이하	22
800만원 이하	8	5,500만원 이하	23
900만원 이하	9	6,000만원 이하	24
1,000만원 이하	10	6,500만원 이하	25
1,300만원 이하	11	7,000만원 이하	26
1,600만원 이하	12	7,500만원 이하	27
1,900만원 이하	13	8,000만원 이하	28
2,200만원 이하	14	8,500만원 이하	29
2,500만원 이하	15	8,500만원 초과	30

추가회비 및 특별회비 선거권 수

회비금액	선거권수
200만원 당	1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3-3

[별지 제1호 서식] (제15조제3항 관련)

공고 제 호

(선거일, 재선거일, 보궐선거일) 공고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일, 재선거일, 보궐
선거일)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 원 선 거 일 : 년 월 일 (○요일)

2. 특별의원선거일 : 년 월 일 (○요일)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

[별지 제2호 서식의(가)] (제16조제4항 관련)

(표지)

년 월 일 실시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 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열람 및 공람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일간)

확 정 : 년 월 일

○○○ 투표구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

[별지 제2호 서식의(나)] (제16조제4항관련)

(표지)

년 월 일 실시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특별의원선거
선거인명부

작성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일간)

열람 및 공람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5일간)

확정 : 년 월 일

○○○ 투표구분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

[별지 제3호 서식] (제17조제3항 관련)

공고 제 호

선거인명부 열람(공람)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및 특별
의원 선거의 선거인명부의 열람(공람)기간과 장소를 다음과 같이 공
고합니다.

1. 열람(공람)기간

년 월 일부터
5일간(공휴일 포함)
년 월 일까지

2. 열람(공람)시간 :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열람(공람)장소 : 광주광역시(시·군) 〇〇구(읍·면) 〇〇
동 〇〇번지
(장소 :)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인

[별지 제4호 서식] (제18조제1항 관련)

선거인명부 이의신청서

상 호 또는 명칭	주소	사 업 자 등록번호	이의신청내용	비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의원, 특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되었으므로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덧붙임 : 소명자료 ○부

년 월 일

신청인 (상호명칭) :

주 소 :

전 화 :

대 표 자 :

①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19조제1항 관련)

선거인명부 불복신청서

상 호 또는 명칭	주 소	사 업 자 등록번호	불복신청내용	비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인명부에 [누락·오기]되었으므로 의원 및 특별의원선거규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불복을 신청합니다.

덧붙임 : 소명자료 ○부

년 월 일

신청인 상호(명칭) :

주 소 :

전 화 :

대 표 자 : ①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제22조제1항관련)

(의원, 특별의원)후보자 등록신청서

상호 또는 명칭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의원)선거에 있어서 의원및 특별의원선거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원, 특별의원)후보자로 등록을 신청합니다.

덧붙임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상호(명칭) ○ ○ ○ ○ ○

대 표 자 ○ ○ ○ 인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 (삭제)

[별지 제8호서식] (제24조관련)

후보자 사퇴서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본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의원)선거에 있어서 입후보를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후보자 상호(명칭) ○ ○ ○ ○ ○

대 표 자 ○ ○ ○ 인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제25조 제3항 관련)

공고 제 호

(의원, 특별의원)후보자등록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의원) 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후보자가 등록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상호(명칭) 가나다순>

번호	후보자상호(명칭)	대표자	번호	후보자상호(명칭)	대표자

[별지 제10호 서식] (제25조 제3항 관련)

공고 제 호

후보자 (사퇴, 사망, 등록무효)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의원) 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후보자가 (사퇴, 사망, 등록무효) 하였(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후보자 상호(명칭)	대표자	비고

[별표 제11호서식의(가)] (제27조제4항관련)

공고 제 호

투 표 소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의원, 특별의원) 선거에 있어서 투표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1. 투표소명칭 및 설치장소

투표소명칭	설 치 장 소	비 고

2. 투표일시 : 년 월 일(○요일) 09:00부터 17:00까지

[별표 제11호서식의(나)] (제27조제4항관련)

공고 제 호

투표소 변경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의원) 선거에 있어서 투표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1. 투표소명칭 및 설치장소

투표소 명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설치장소	설치장소	

2. 투표일시 : 년 월 일(○요일) 09:00부터 17:00까지

[별지 제12호서식] (제27조제5항관련)

(의원, 특별의원)후보자 일람표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의원, 특별의원) 선거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의원, 특별의원)후보자 일람표를 게시합니다.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상호(명칭) 가나다순>

번호	후보자상호(명칭)	대표자	번호	후보자상호(명칭)	대표자

[별지 제14호 서식] (제28조 관련)

투 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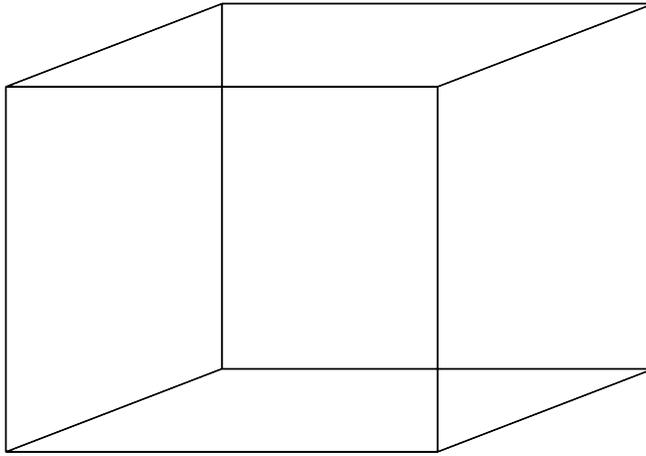


그림 1

- 주) 1. 규격은 가로50cm, 세로50cm, 높이90cm 내외로 한다.
- 2. 상단에 투입구와 뚜껑을 설비한다.

[별지 제15호 서식] (제29조 제1항 관련)

투 표 안 내 문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의원) 선거	
투표일시	년 월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장소	광주상공회의소회관 () (광주광역시 서구 동성동 652-1번지)

귀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의원, 특별의원)의 선거권이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오는 년 월 일은 투표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투표소에 오셔서 꼭 투표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명부 등재내역			
선거인명		등재번호	
대표자		선거권수	〇〇개

☞ 지참물

1.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경우 : 대표자가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중 하나를 지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2.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직접 투표에 참가할 수 없는 경우 : 임·직원이 다음을 지참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가. 대리투표자가 법인인 선거인의 임원일 경우
 - 1) 위임장(반드시 동봉하는 위임장을 사용해야 하며,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및 선거인의 법인인감증명서
 - 2) 선거인의 임원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리투표자의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중 하나
 - 나. 대리투표자가 선거인의 직원일 경우
 - 1) 위임장(반드시 동봉하는 위임장을 사용해야 하며,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합니다) 및 선거인의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2) 선거인의 직원임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투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또는 사원증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장의 명칭이 선거인으로 기재되고 대리투표자가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인

[별지 제16호 서식] (제29조 제1항 관련)

위 임 장

수 임 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소 속		부 서	
	직 위		전 화 번호) -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
의원) 선거에 있어서 본인의 투표권을 위의 수임인에게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인	상호 또는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인

☞ 유의사항

1. 대표자를 대신하여 임·직원이 투표할 경우 반드시 이 위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위임장에는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2. 이 위임장의 빈 난을 모두 기재해야 하며, 특히 위임하는 대표자란에 **인감**이 반드시 날인되고 선거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3. 이 위임장을 가지고 투표하는 임원은 선거인의 임원임을 증명하는 법인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4. 이 위임장을 가지고 투표하는 직원은 투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발행된 재직증명서(사원증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합니다)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사업장의 명칭이 선거인으로 기재되고, 대리투표자가 가입자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을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인

의원 및 특별의원 선거규정 3-3

[별지 제17호 서식] (제35조 제1항 관련)

(표지)

년 월 일 실시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의원, 특별의원)선거 투표소

투 표 록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1. 투표용지 관리상황 (내지)

수령 일시	년 월 일 시 분		
보관 장소	구(시·군)	동(읍·면)	번지
	(장소 :)		
수령·보관시 참여위원	성명	참여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2. 투표상황

투표소 설치장소	구(시·군) 동(읍·면) 번지					
	(장소 :)					
투표소 운영시간	개시시각	년 월 일 시 분				
	종료시각	년 월 일 시 분				
참석위원	성명	참석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투표현황	선거인명부 등재자 수	투표자수			기권자 수	비고
		대표자 직접투표	위임장애 의한투표	계		
투표용지 수령·교부현황	수령매수		교부매수		잔여매수	

이 투표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성자 위원 ○ ○ ○인

이 투표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년 월 일
위원 ○ ○ ○인
위원 ○ ○ ○인
위원 ○ ○ ○인
위원 ○ ○ ○인

[별지 제18호 서식의(가)] (제37조 제1항 관련)

공고 제 호

개 표 소 공 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〇〇대 (의원, 특별의원) 선거에 있어서 개표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표소명 : 광주상공회의소 (의원, 특별의원) 개표소

2. 설치장소 :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52-1번지
(장소 :)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8호서식의(나)] (제37조제1항관련)

공 고 제 호

개표소 변경 공고

년 월 일 실시하는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의원, 특별의원) 선거에 있어서 개표소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개표소 명칭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설치장소	설치장소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9호 서식] (제42조 제2항 관련)

개 표 참 관 증

(앞면)

○ ○
No.
개 표 참 관 증
광 주 상 공 회 의 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뒷면)

○ ○
준 수 사 항
1. 이 참관증은 개표소내에서 늘 달아야 합니다.
2. 참관인은 지정한 장소에 서 정숙하게 참관하여야 합니다.

- 주) 1. 규격은 가로 7cm, 세로 12cm로 한다.
2. 고리로 달 수 있도록 제작한다.

[별지 제20호 서식] (제43조 제1항 관련)

(표지)

년 월 일 실시
광주상공회의소 제○○대 (의원, 특별의원)선거

선 거 록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내지)

1. 개표관리상황

개 표 소 설치장소	구(시·군) (장소 :)	동(읍·면)	번지)
개 표 소 운영시간	부터 까지		
참석위원	성 명	참 석 시 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2. 개표결과

투표구	선거인		투표					기권		비고
	선거 인수	투표 권수	투표 자수	투표용지 교 부 수	유 효 투표수	무 효 투표수	투표하지 않은 수	기권 자수	기 권 투표권수	
합 계										

3. 후보자별 득표현황

연번	상호 또는 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득표수	비고
합 계					

4. 당선인 결정상황

연번	상호 또는 명 칭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결정근거	비고

(결정근거는 “1위 득표자”, “2위 득표자” 또는 “무투표당선” 등으로 기재함)

이 선거록은 사실대로 기록·작성하였음

년 월 일

작성자 위원 ○ ○ ○인

선거록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함.

년 월 일

위원장 ○ ○ ○인

부위원장 ○ ○ ○인

위원 ○ ○ ○인

위원 ○ ○ ○인

위원 ○ ○ ○인

[별지 제22호서식] (제45조제4항관련)

당 선 통 지 서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사업자등록번호 :

귀 회원(특별회원)은 년 월 일 실시한 광주상공회의소 제
○○대 (의원, 특별의원)선거에서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위원회 [인]